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 중요시설물 담보설정 미승인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시, 부여군

내 용

충청남도에서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에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에서 정

한 기간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조사업 지원과장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행정자치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5. 3. 3. 개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5. 3. 2. 이전) 또는 시·도지사(2015. 3. 3. 이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시, 부여군에서는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농업인(6명) 및 법인(1개소)이 아래 [표] ‘중요시설물 근저당 설정 미승인 내역’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장비포함)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채권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중요시설물 근저당 설정 미승인 내역

사업 년도	시·군	사업명	사업예산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근저당 설정자 (설정일자)
계			1,109,760	7명		
2014	부여군	○○○○○○○ ○○○사업 (추가)	100,310	○○○	버섯재배사(2동, 122.5㎡)	○○○농협 (2014.6.12.)
			100,197	○○○	버섯재배사(2동, 120.6㎡)	○○○농협 (2014.6.25.)
			125,211	○○○	버섯재배사(3동, 113.46㎡)	○○○농협 (2014.6.24.)

사업 년도	시·군	사업명	사업예산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근저당 설정자 (설정일자)
2015	천안시	○○○○○○○○	111,204	○○○	축사신축(1동, 384㎡)	○○농협 (2015.12.15.)
			437,390	○○○	축사개축(2동, 2,096.99㎡)	○○은행 (2014.5.16.)
			75,448	○○○	축사신축(1동 396㎡), 퇴비사(50㎡)	○○축협 (2015.10.19.)
	당진시	○○○○○○○	160,000	○○○○○ 영농조합법인	트럭(27톤)	○○○○○○○(주) (2015.9.24.)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는

[시정]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시설물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부담 담보 재설정, 충청남도지사의 사후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